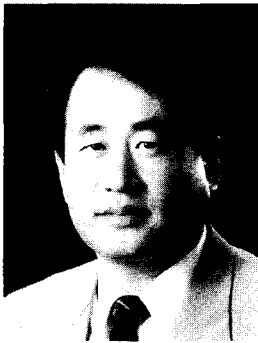


주류산업의 개방압력과 규제개혁, 우리의 방향은 옳은가?



이 영 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자동차, 소고기, 반도체, 컬러 TV와 주세 등을 둘러싼 각종 통상마찰은 이제까지 우리가 상대방과 협의해 왔다고는 하나 상대방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안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이나 EU 등 상대방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금융 및 외환위기로 기인한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체질개선 과정에서 온 국민이 힘든 전쟁을 하고 있다. 경제 체질의 구조개선을 통해 한국의 각종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되어 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이를 계기로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그 동안 주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세수확보, 국민보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논란의 핵심은 주류산업에 대한 시설기준의 완화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시설기준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이 과점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신규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철폐해야하고, 또한 주정원료 배정제도와 유통·판매 등에 대한 진

■ 目 次 ■

- I. 한국 주세분쟁의 개요
- II. 주류산업 규제개혁안
- III. 대응방안 및 앞으로의 방향

입장벽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세청은 미국, 일본, 스위스 등 많은 나라가 전매제 등을 통해 주류산업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자국의 농산물 보호, 세수 확보, 국민보건차원에서 이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7월 10일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주류분야와 관련된 모두 22개의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 탁주의 신규제조면허 허용.
- 납세병마개 제조 신규 진입 허용.
- 주류산매업 면허요건 완화.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 폐지.
- 주정가격 고시제도 폐지.
- 주정 신규 제조면허 허용 및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류분야도 하나의 주요산업으로 인식돼야 하기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진입제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주류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세수 확보, 국민건강, 유통질서 문란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정위가 내놓은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대한주류공업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도 "탁주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진입제한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소비패턴이 맥주나 양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정생산을 자유화하면 대한민국은 술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생산 및 판매분야의 20개 핵심과제에 대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처음 논의되었던 22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안에 비해 한 두 가지 국세청의 안이 반영되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주류산업 규제개혁을 포함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IMF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방향이 옳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방향성은 일단 그 목표가 얼마나 포괄적이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결정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안과 이미 패소가 결정되어 상소할 예정인 WTO와의 주세협상에 대한 대응방안과의 연계성이다.

주세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거의 확정적인 만큼 우리는 이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위스키의 세율을 내리는 대신 소주의 세율을 위스키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소주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월 1일 OB맥주는 벨기에 인터브루사와 50대 50의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이트맥주는 캐피탈그룹에 33%의 주식을 주는 대가로 3,0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진로쿠어스맥주를 미국 쿠어스사에 인수시키는 협상을 벌이며 인수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맥주시장은 외국자본의 대리점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과 EU의 맥주회사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조건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합하여 총 196%에 달하는 맥주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위스키에 이어 맥주에 부과되는 세율이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맥주업계는 지난 89년부터 맥주에 대한 세율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주세

수입 중 72%를 상회하는 맥주로부터의 세금 수입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맥주업계에서는 외국의 맥주 업체들을 주주로 유치했기에 그들을 통해 세금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맥주 3사가 줄줄이 외국 맥주회사와의 합작을 성공시킴에 따라 이들 삼사의 협상이 끝나면 미국과 EU가 곧바로 주세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작업이 EC와의 WTO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예상하고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엔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주세 압력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맥주회사들이 앞으로 제기할 각종 압력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알고 싶다. 당장 눈에 보이는 주세분쟁은 단지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차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스키에 대한 세율인하 압력이 달성된 다음에는 어떤 분야로 그 압력이 옮겨갈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한쪽에서는 외국과 주세분쟁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이 개혁 일정에 밀려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폐지 및 완화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입장은 전 분야에 걸쳐 모든 규제를 당장 폐지하고 즉시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분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하되 항상 전체 경제의 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주류산

업에 대한 규제의 폐지나 완화가 어떤 방향에서 어떠한 틀을 목표로 정해져야 했는가는 자명하다.

이러한 국가경제 전체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으로 주류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과의 주세분쟁은 하나의 분리된 과제로 간주하고 우리 소주는 민속주의 일종으로 외국의 위스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류이므로 세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만 외치고, 주류산업의 규제개혁은 또 다른 분리된 과제로 각 안전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입장만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을 되풀이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류업계도 타의에 의해 경쟁 속에서 새로운 생존방법을 배우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류업계의 준비는 되어있는가?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이제야말로 징세편의주의정책을 과감하게 벗어 버려야 할 때다. 국민정부는 지난 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법안은 국회에서 몇 달째 낫잠을 자고 있으며, 한때 정부안에서도 논의되던 소비에 의한 추계과세제, 자본이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 등 각종 세제개혁안들이 도입이 유보되거나 묵살되고 있다. 게다가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들자 건강관리기금, 담배에 대한 10%부가가치세 부과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류산업의 규제개혁안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입장은 일관성 있게 세원확보의 중요성을 앞세운 편의주의와 생산농가보호라는 명분 좋은 허울과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근본적인 개혁마인드가 결여된 구태의연한 주장 등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논리만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은 “줄속이라도 좋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시도하라”고 관료들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규제 6,915건, 행정규제 4,085건으로 모두 11,000건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를 줄인다는 식의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을 할 위험도 있다. 지난 8월 총리실이 발표한 17개 행정부서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올해 정비할 규제는 7,959건에 달하지만 각 부처는 44.1%인 3,508건만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상반기 규제 정비 실적은 570건에 불과하기에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개혁의지가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3월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의 ‘한국생산성 보고서’는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은 주요 국가 중 하위라고 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규제의 틀 안에 묶인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IMF가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단언하고, 한국은 생존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남들은 우리가 생존차원의 개혁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 우리들은 어떠한가? 공무원들은 인·허가업무가 없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규제철폐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전체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의 철폐도 저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과거 체제에서 안주하던 울타리를 제거하려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은 국세청과 주류업계는 모두 마음을 비우고 가장 바람직한 주류산업 전체의 발전

을 위한 커다란 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이다. 전반적인 올바른 틀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직시해서 우리의 강점을 강화할 방안과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또한 현재 우리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과 도약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냉철히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지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현대와 같이 분화된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처지를 서로 이해해 보다 큰 틀을 짜기 위해 눈앞의 작은 희생을 감내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IMF 극복을 위한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할 때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주세분쟁의 개괄적인 진행상황 및 전망과 금번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안팎의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한 주류업계의 대응방안을 간단히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주세분쟁의 개요

1) 절차적 진행

1997년 4월 9일 EC는 한국이 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근거하여 HS2208에 속하는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 1994 제 22조 1항 및 DSU 제4조에 근거,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5월 29일 EC와 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5월 23일 미국도 특정 주류에 대한 한국의 내국세에 관하여 GATT 1944 제22조 및 DSU 제4조에 근거,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했

다. 6월 24일 미국과 한국은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했다.

1997년 10월 16일 분쟁해결기구(DSB)는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했다. 12월 5일 WTO 사무총장은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구성했다. 또한 이 분쟁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3국 참여를 신청했다. 정부는 그 동안 미국과 EU측에 알콜 도수 1도당 2.5%씩의 주세를 부과하고, 교육세는 20% 또는 30%로 단일화한다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미국과 EU측은 주세의 격차를 완전철폐를 요구해 왔다.

2) 분쟁의 배경

한국의 주세율 체계는 주정에 대해서만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증가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다. 현재 맥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는 96년부터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주는 희석식과 증류식에 각각 35%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주세액의 10% 또는 30%(주세율 80% 이상 주류)를 세율로 하는 교육세(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

EC는 소주(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1997년 1월 17일 브뤼셀에서 한·EC 주세협정을 가졌으며, 동 협의에서 EC는 한국에 대해 동년 3월 15일까지 주세율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한국은 동년 3월 중순경 EC측에 대해 주세율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5월에 양자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년 4월 2일 EC는 동 사안을 WTO에 제소하여 WTO 체계내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미국이 가담하였다.

3) 제소국의 주장

〈EC의 주장〉

한국은 주세법 및 교육세법을 통해 HS2208에 속하는 특정 주류에 비하여 소주에 대해 특혜적 조세대우를 함으로써 GATT 1994 제3조 2항을 위배했으며, 따라서 GATT 1994 하에서의 EC의 이익을 무효화 및 침해했다.

〈미국의 주장〉

한국의 주세법 및 교육세법을 통한 주류에 대한 과세는 GATT 1994 제3조 2항을 위배함. 한국은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럼, 진 등 여타 증류화 주류에 적용되는 높은 세금에 비해 한국의 전통적 증류화 주류인 소주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미국의 증류화 주류에 대한 조세부담은 소주에 대한 조세부담의 배 이상에 이른다.

4) 지금까지의 결과

WTO의 주세패널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 보호를 목적으로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에 대해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는 등 차별과세를 하고 있다는 EU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주와 위스키의 차별을 없애도록 주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한국이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WTO협정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고 한국의 패소를 결정했고, 정부는 이와 같은 판정에 대해 상소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가 상소할 경우, 최종판정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오는 연말쯤 날 전망이다. 상소심에서도 동일한 판정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는 15개월 이내에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이 같아지도록 법률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연말 상소심의 결정도 한국의 패소로 결말이 난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약 1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남은 18개월 미만의 시간 내에 우리는 주류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

2. 주류산업 규제개혁안

지난 8월 24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총리·李鎮高 안동대 총장)는 낙후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생산 및 판매분야의 20개 핵심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규제개혁위가 마련한 주류 산업 규제개혁은 주류의 생산·판매·유통 등 전 과정에서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술 산업이 수입원료 및 완제품 의존형 시장으로 전략해 버려 점차 존립 기반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규제개혁위의 위기 의식 때문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고서는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주류산업을 세원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통제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낙후를 면치 못했고, 이번 규제개혁으로 업체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40년간 신규업체 진입금지라는 온실에서 자란 주류산업은 수입원료 및 완제품 의존형 시장으로 전략했기에 경쟁원리를 전 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규제개혁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i. 탁주 및 주정사업의 진입규제 철폐 :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주정업체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며 탁주시장의 경우 주류제조장 소재지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했던 공급 장벽도 허물어진다. 또 국세청장이 주정생산량을 배정했던 제도

도 함께 사라진다. 이에 따라 막걸리 등 주류시장은 술맛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 ii. 주류제품의 다양화를 위한 생산 방식제한 완화 : 소비자 취향에 맞춰 술맛을 다양화하기 위해 리큐르(과일주)의 제조 방법제한이 느슨해지고 주류의 알코올 도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막걸리의 경우 맥주처럼 '저알콜 막걸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iii. 민속주와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 주로 마을단위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민속주와 전통주의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전통주 도매면허가 신설돼 전통주 시장의 확대도 예상된다. 아울러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탁·약주의 제조용기 제한도 풀려 미적 감각이 뛰어난 항아리, 나무통, 알루미눔용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내용을 중요한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 주정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내용

① 주정산업의 신규참여 허용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면허의 제한 규정에 따라 신규진입을 제한하여 왔으나 주정 신규제조면허의 허용요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해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주정제조업의 경우 국세청이 지난 73년 신규면허를 동결한 이후 지금까지 12개 업체만이 독점적 영업을 해 왔으나 국세청 고시를 개정해 주정 제조업 신규참여를 허용하였다. 이는 주정제조업체간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주정제조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신

규면허를 허용하였다.

주정은 알콜분 95도의 순수알콜로 주정의 유통문란은 밀조주의 제조, 탈세 등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세계 각국이 세수 확보 및 국민보건위생 보호차원에서 전매제도(일본,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대만 등 7개국은 정부 전매제도) 또는 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제조와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제까지 규제의 목적은 자국의 농산물보호, 세수 확보, 국민보건, 산업정책 같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 특히 주정의 생산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타국의 규제를 문제삼지 않아 WTO체제하에서도 무역이슈가 되지 않는다. 주정을 자율화하는 경우 질 낮은 주정의 유통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입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영효율화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번에 신규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주정제조면허를 개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신규참여업체에 세무공무원을 상주시켜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또한 면허 개방시 저렴한 수입원료를 선호하게 되기에 국산원료의 재배농가소득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현 주정공장의 가동률이 78% 수준이기에 신설투자는 과잉투자자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생산 기반과 생산체제의 구조전환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정생산업체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주정판매제 개선

1972년 주정업계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대한주정판매(주)가 독점하는 주정도매업도 신규면허를 허가할 예정이다.

③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제한 폐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정회사별 주정 생산량 배정제도는 2000년까지 폐지된다. 그러나 국산 원료 배정제도 및 그와 연계된 수입 조주정 배정제도는 농가 보호를 위해 당분간 유지된다.

④ 주정가격 고시제도 폐지

업체간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술개발, 원가절감 노력의지를 저해하기에 주정 가격고시제도를 폐지한다. 현재까지는 주류협회에서 주정가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주정가격을 고시하여 왔다. 가격고시의 목적은 자국의 농가보호 및 간접적인 수요규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가격경쟁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가격을 적용하는 Full제를 적용하여 가격을 통제하여 왔으나 고시가격제를 폐지하는 경우 저질주정의 유통 가능성이 있고, 가격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주정가격을 고시하고, 독일은 연방전매 행정처에 의해 주정판매가를 결정하고, 스위스는 정부가 주정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주정가격의 고시제도를 폐지할 때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면허개방시 저렴한 수입원료를 선호하게 되기에 국산원료의 재배농가소득에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현 주정의 품질이 고급수준이기에 더이상 품질이 향상될 여지가 적다.

2) 주류생산 분야의 규제개혁 내역

① 탁주 신규제조 면허 허용

신규진입의 제한으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주질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어 전체 탁주산업의 사양화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탁주가 개발될 소지를 원

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에 76년부터 동결해 온 탁주의 신규면허를 200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해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신규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셈이었다.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허용할 때의 문제점으로는 탁주는 소비자의 기호변화로 인한 소비량 감소추세로 사양화되고 있기에 (97년의 출고량은 87년에 비해 78%의 감소율) 현재 면허를 반납하거나 경비절감을 위한 탁주제조업자들간 공동제조면허로 공동제조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경쟁력제고를 위해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이 같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조면허 허용시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탁주업계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②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중소제조업자가 맥주 약주 등의 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류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건물면적 등 불필요한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최소한 필요한 시설기준만을 규정한다. 맥주도 과도한 시설기준을 요구해 중소제조업자의 신규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최소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탁주와 약주 제조용기의 재질제한을 최소화해 항아리, 나무통, 알루미늄 용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③ 주류제품별 규격제한 개선

다양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토록 규격제한을 개선한다. 주종별로 알코올 도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류제품별 규격제한 제도를 올해 말까지 개선하여 탁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 3도 정도인 저알콜 탁주와 식물약재를 첨가한 탁주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양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알코올 도수 규제도 완화한다. 탁주는 현행 6도 이상에서 3도 이상으로 낮춘다. 또 빠르면 내년초부터 각종 주류의

알콜 도수제한이 없어져 다양한 술이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또 주종별 알코올 도수 제한규제를 풀어 제수용으로 많이 쓰인 예주, 감주 등 3도정도의 저알콜 탁주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④ 리큐르 원액의 제조 및 사용규제 대폭 완화

리큐르 원액 제조방법을 대폭 완화하고 원료사용량 및 원액사용비율 등을 상표기재사항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매실·과포 등 과실로 만드는 리크류 원액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제도 낮춰 사용량과 원액사용 비율 등을 상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개선

병마개 제조자의 요건을 객관화, 투명화하여 지정대상업체를 확대하며 주류나 음료제조업체가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삼화왕관(주)과 세왕금속공업(주) 두 개사가 독점하고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확대하여 오는 12월부터 제조기술과 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새로운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제2항·제4항 및 주세법 제3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여 고시하여 왔다.

이처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여 온 것은 특별소비세 및 주세는 세율이 높아 탈세요인이 많기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반출시점에서 납세증지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출고수량을 관리하고 부정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보전을 위한 안전장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위해 필요하고, 현 제조사들의 평균가동률이 51.4% 수준이기에 과다지정의 필요가 없다고 이의 폐지를 반대하였으나 이번에 지정고시제도가 폐지되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할 경우 관리가 어려워 부정·불법유통의 위

협이 있고,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⑥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주류제조장에 주종별로 주조사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주조사 공급도 대폭 확대, 주조사에게 연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처럼 주조사 활동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다.

3) 주류수입 및 판매 분야의 규제개혁 내용

①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규제해 왔으나 주류판매업 면허시 주류제조업자와의 거래약정서 제출 등 진입제한 요건의 삭제 또는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주류소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인적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청에서는 소매업소의 무자료 거래 유인이 크기 때문에 탈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한 법인을 지정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매업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의 양성화,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나라는 아직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에 주류도매업자에게 겸업을 허가하면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으며, 국내주류제조자가 수입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외 현지 생산을 통한 수입으로 국내주류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도·소매업에 주류판매업자만이 주류를 취급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영세화를 방지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요건 등을 강화하여 대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류는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탈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은 면허 또는 전매제도를 채택하여 주류의 제조·유통과정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탈세방지를 위하여 각국은 제조부문보다는 유통부문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주류전매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류유통단계에 대한 행정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주류 소매업뿐만 아니라 주류도매업에 대한 판매면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주류 판매업 면허의 통합

현재 12종인 주류판매업 면허를 주정도매업, 전통주도매업, 일반주도매업, 주류소매업, 주류중개업, 주류수입업 등 6개로 통합한다. 또한 특산주와 전통주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 수출입면허는 국내면허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수출면허를 겸업하는 경우 수출주류는 면세주류이기에 수출면세주류의 국내불법유통 등으로 주류거래질서 문란 및 세원관리가 어렵다. 또한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수입면허를 겸업하는 경우 수입유통단계의 축소로 수입주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

· 주류 중개업면허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한정하여 중개하기에 별도의 면허구분이 필요하다. 생필품 유통근대화 지원차원에서 연쇄화 사업자에게, 농어민의 가계소비절약과 생활편의 차원에서 농수축협에 대해 부여한 면허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은 총11종 22분류, 미국도 세분관리, 독일은 전매제도, 스웨덴은 고도주는 전매제, 저도주는 면허제, 스위스는 면허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이 주류판매의 면허를 주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매점간의 인구규모, 거

리, 위치, 기존의 면허보유업소,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용량 등을 엄격히 심사하며, 주류소매업에 대해서도 점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많이 있다. 즉 세계 각국이 주류의 사회적 비용 및 세원확보를 감안하여 판매면허를 세분화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소매면허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90년 주류도매업면허의 개방에 따른 면허증가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주류유통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주류 유통구조는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주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타국에 비해 매우 많기에 주류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류선택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소비자의 주류 구입기회가 확대되어 전국민의 주류소비를 촉진하고, 통신판매는 거래상대방 확인이 곤란하기에 주류유통체계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세원관리가 어렵게 된다.

또한 민속주 등의 특정주류에 대해 공공기관을 통해 통신판매를 판매하는 방안은 수입주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값이 오를 것이 확실한 소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인하된 효과가 나는 위스키 등의 통신판매 허용을 요구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수입 위스키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③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 폐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해 생산지역 시·군으로 제한된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2000년까지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포천군에만 공급하던 포천막거리를 전국 어디

에서나 마실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서비스 및 품질선택권을 제한하고 우수한 업체의 시장진입 및 시장성장을 저해하기에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를 폐지하지만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조일자 혹은 저장기간 명시 등 보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효주인 탁주는 10°C 이하에서도 5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상표에도 반드시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 장거리 운반시 변질의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보건 위생이 위협받고, 장거리 운반에 따른 물류비용의 추가 부담으로 경영악화의 우려가 있으며,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부정주류의 유통, 영세 군소제조업체들의 도산 등 사회적 물의가 예상된다.

④ 주류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신고제 폐지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탁주도매업자 등의 주류판매가격 신고제도가 올 연말부터 폐지된다.

⑤ 전통주 판매제한 완화

안동소주 등의 민속주와 농민 등이 생산한 특산주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전통주 도매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안동소주 등의 민속주와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특산주가 슈퍼나 연쇄점 등에서 팔릴 수 있게 되었다.

4)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내용

①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폐지

주류업단체가 주류업자의 생산·가공의 통일조정,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공동판매사업 등과 같은 공동행위의 우려가 있는 사업 허용 규정을 삭제하였다.

3. 대응방안 및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결코 밝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류산업과 관련해 정부와 주류업계가 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에 의한 합의와 경쟁에 기초를 둔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장경제는 경쟁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주의에 의한 합의는 공존의 개념이다. 이러한 두 개념이 교묘히 이용될 때 정책의 방향은 모호해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합의의 함정'이다. 무사안일이 체질화되어 있는 공직사회는 합의정신을 책임 떠넘기기 정도로 해석하고 있고, 또 일부 공직자는 합의를 원용해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자기정당화를 위한 '정책의 균형과 조화'이다. "규제개혁도 시급하고, 일정한 감독도 필요하다." "경쟁을 통한 선진화가 불가피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다." "구조조정을 위해 감원도 해야 하지만 한편 실업대책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벌이는 구조조정, 재벌정책, 빅딜,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과제는 방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개혁을 위해서는 책임자의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의 묘수는 없다. 책임자가 욕먹을 각오로 일관성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한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과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신념과 용기를 갖고 대처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나만을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하는 계산되지 않은 신념이어서는 곤란하다. 국민 전체를 위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고통분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EU 및 미국과의 주세분쟁에서

일단 패소했고, 상소를 해도 우리가 다시 패소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패소해서 주세 개정을 마쳤다.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교훈 삼아 나름대로 대처했다고 하나 최종 결과는 예상대로 비관적이다. 정부는 이미 위스키의 세율을 내리는 대신 소주의 세율을 올리고, 교육세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면 그 이후의 소주 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이제까지의 우리 소주업계는 그동안 정부에서 세원확보를 위해 지나친 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적응할 만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주류산업의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면서 그 첫째 목적이 경쟁원리의 도입이라고 한다. 그동안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왔던 정부가 갑자기 EU와 미국과의 소주 세율분쟁을 겪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나라는 '규제의 천국'으로 불리어 왔다. 기업의 투자 - 생산 - 판매과정에서부터 심지어는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규제가 있어 왔다. 자유경제 원리 아래서는 규제가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해온 규제개혁정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IMF사태이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경제체제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규제조항만을 고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제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을 완화하거나 폐지했기 때문이다. 규제철폐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의 경제상황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부의 규제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현 시점에서조차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

다고 판단된다. 현재 금융업계와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국내 경제가 완전히 시장경제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구호만으로는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계속될 경우 그 결과는 이제까지의 결실 없는 결과와 같을 것이다.

또한 규제의 완화가 규제 자체를 풀기 위한 것어서는 안된다. 규제의 완화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규제철폐를 선거 공약으로 주창하여 강행한 결과, 사회 각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완화된 규제조치가 일반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버린 가장 좋은 예가 레이건 정부가 시도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혁이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빈익빈 부익부의 악화 현상을 초래 되었다. 의료보험료율과 의료시설, 의료임금 등 병원의 각종 비용을 규제하던 많은 규정들이 철폐되자 의료비용은 하늘높이 치솟았다. 현재 높은 의료보험료때문에 국민의 40% 이상이 보험이 없고, 의사들의 수입은 두, 세배가 올라갔다. 이처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규제의 완화는 오히려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개방압력으로 인한 주류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두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전체 국가경제 목표에 맞게 조정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가 하는데 있다.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주류업계 내부의 경영혁신과 연결시키고, 또한 주세분쟁의 결과로 곧 나타날 우리의 문제점과도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를 개혁하는데 있어 이해 당사자 못지 않게 관련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도 문제이다. 이번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에서 보여준 주무부처의 주장도 거의 전부 부처이기주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주류산업 규제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수정수용 의견을 내어 놓으면 “다만, 규제개혁차원에서 명문의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법령상의 면허기준과 행정적 관리 등을 강화”하자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외형상의 규제는 풀되 기술적으로 규제를 풀지 말자는 부처이기주의로 아직도 재정경제부의 관료들은 규제를 곧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도 거의 모두 “장기적으로는 완화하되, 국내 생산기반과 생산체제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목적이 주류산업의 생산 및 판매구조의 골격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그 구조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하자는 발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이러한 국제청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의 반대의견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의견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 폐지 또는 무조건 허용 또는 무조건 완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규제만능주의도 문제지만 규제폐지만능주의도 문제다. 비록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폐지만이 목표는 아닐 것이다. 이처럼 관련부처 모두가 규제개혁의 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정부와 국민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단계 앞을 내다보고 외국의 개방압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청은 안정적인 세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

의 주류업계를 살려가면서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합리적인 조세체계 및 징세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주류업계도 틀에 박힌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정부의 보호라는 우산을 벗고 나올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타 산업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한편 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음주의 사회적 문제이고, 요즘은 청소년 보호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여기에는 항상 청소년의 음주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이번 주류산업의 규제개혁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얼마나 또한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묻고 싶다. 만일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주류업계의 매출과 국세청의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회규범적이 제재를 출선하여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의 심야 영업 허용방침에 대해 각계에서 논란이 많은데도 주류업계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주류의 생산 - 유통 - 판매 체계는 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산 측면만을 규제해 왔기에 판매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세원측면에서는 생산만 통제하면 되고, 판매측면에서는 매출만 신장시키면 된다는 논리

를 버려야 한다. 술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규범 차원의 제재를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 나의 이익보다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는 어느 한 부분을 개혁한다고 개선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기에 이를 총체적인 관점(holistic view)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항상 전체를 중시하면서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다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전체의 효과가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다른 부분에는 개악이 되어 전체 국가의 효율성이 되려 떨어진다면 이런 개선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한 부분에는 손해가 가는 일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개혁안이 마련되었는가 궁금하다. 대통령이 "금년내에 50%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라"고 했기에 단순히 계량적인 비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폐지하는 규제개혁이 아니었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